
「」

[2010. 3.19] [1 , 2010. 3.19,] () 02 - 2023 - 7313

1 ()

2 () 「」 (" ") 2 1 5

1

• () . < 2009.1.16 >

1. ()

2. •

.< 2009.1.16 >

1. 가 (가)

2. <1999.8.13 >

3.

가. 1

• 1

• 2

• 1

• 1

• 1

• 1

• 1

• 1

• 1

• 1

• •

2 .<

<2009.1.16 >

3

.< 2009.1.16 >

4

• • .< 2009.1.16 >

3 () 2 2

1. 가 (" ")

2.

3.

4.

4 () 2 3 5

.

1

2

.<

[2009.7.1>](#)

5 () , (" . ")

. .

. 가 1

6

. < [1999.8.13](#), [2008.3.3](#), [2009.7.1](#),

[2010.3.19>](#)

1. 2 2

2. 2 4

5

3.

4. 4 2

2

5. 가

6 <[1999.8.13](#)>

7 <[1999.8.13](#)>

8 () 3 3 (" ")

가

1

9 () 3 3 가

40% , 60%

60%

가

4 1

(" 가

") .< [1998.9.23](#), [2008.3.3](#), [2010.3.19](#)>

10 <1998.9.23>

11 () (" ") 8
9 . < 1999.8.13 >

12 () 7 1
10 . <
1998.9.23, 2008.3.3, 2009.1.16, 2010.3.19 >

1. . , 4 1 4

2. 5 1 2

3. () 2

<1998.9.23 >

1

14

11

. , 4 1

4

가

14

. < 1998.9.23, 2008.3.3, 2009.1.16, 2010.3.19 >

13 () 12 3 (" ")
) 12 . .

. < 1999.8.13, 2009.1.16 >

1. ()

2.

13

,

. . . < 2009.1.16 >

14 () . . 13

14

1.

2. .

3.

15 () <1999.8.13 >

. < 1999.8.13 >

1.

2.

3.

4. (p.d.)

5. ()

6.

7. (가)

8. 가

9.

가

16 () 13

15

. < [1999.8.13](#) >

17 <[1999.8.13](#)>

18 () 14 1

20

8

. < [1999.8.13, 2008.3.3, 2010.3.19](#) >

<[1999.8.13](#)>

• •

1

• , 1

1.

2. <[1999.8.13](#)>

3. 가 가

3

16

. < [1999.8.13](#) >

14 1

• •

. < [1999.8.13, 2008.3.3, 2010.3.19](#) >

19 () 18

2

18

. <

[1999.8.13, 2008.3.3, 2010.3.19](#) >

19

. < [1999.8.13](#) >

20 <1999.8.13>

21 () 18

3 . < 1999.8.13>

1. (가)

2.

3.

22 ()

20

. < 2008.3.3, 2010.3.19>

1. ()

2. () 2

3. ()

12 1

20

. < 2008.3.3, 2010.3.19>

1

. < 2008.3.3, 2010.3.19>

23 () 22 1

< 2008.3.3, 2010.3.19>

24 () 21 1 22 1

. < 2008.3.3, 2009.1.16, 2010.3.19>

1

. < 2008.3.3, 2009.1.16,

2010.3.19>

<2009.1.16>

25 () 가 27 3 가

4 2

가 . < 2005.10.17, 2008.3.3, 2010.3.19>

< 2005.10.17 >

1. : 2

2. : 500

[1998.9.23]

26 () 15 4 2
15 4

< 1 ,2010. 3.19 >

1 () . < >

2

3 () <57>

<58>

5 , 9 2 , 12 1 3 , 18 1 · 5 , 19
1 , 22 1 · 2 3 , 23 , 24 1 · 2 , 25 1 ,
2 , 10 , 11 20 " 가 "
" " .
10 " 가 " " " .

<59>

<84>

[별표 1]

의료기사등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제8조관련)

의료기사 등의 종별	구분	필 기 시 험 과 목	실기시험의 범위
1. 임상병리사		가. 공중보건학개론	병리검사에 관한 것
		나. 해부생리학개론	
		다. 조직병리학(세포학 포함)	
2. 방사선사		라. 임상화학(노화학·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포함)	방사선영상진단기술, 초음파검사기술, 방사선치료기술, 핵의학검사기술에 관한 것
		마. 혈액학(혈액은행 포함)	
		바. 임상미생물학(바이러스·기생충학·면역혈청학 포함)	
		사. 임상생리학(생리학적검사 포함)	
		아. 의료관계법규	
		가. 공중보건학개론	
		나. 해부생리학개론	
		다.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학·전기공학개론·방사선관리학·방사선생물학에 관한 것)	
		라. 방사선응용(방사선기기학·방사선계측학·방사선사진학에 관한 것)	
		마. 영상진단기술학(방사선영상학·전산화단층촬영기술·초음파기술학·자기공명영상학에 관한 것)	
바. 방사선치료기술학			
사. 핵의학기술학			
3. 물리치료사		아. 의료관계법규	물리치료, 운동치료에 관한 것
		가. 공중보건학개론	
		나. 해부생리학개론	
		다. 물리치료학개요(수치료·전기 및 광선치료·보조기 및 의수족에 관한 것)	
		라. 운동치료학개요(운동기능평가 및 측정 운동치료·임상운동에 관한 것)	
		라. 의료관계법규	

비 고 :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전염병예방방법·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전염병예방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안경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4. 작업치료사	마. 질환별물리치료학개요(근육·골격 및 신경계질환에 관한 것) 바. 의료관계법규 가. 공중보건학개론 나. 해부생리학개요 다. 작업치료개론(측정 및 평가, 질환별 작업치료 사업분석) 라. 일상생활동작(생활동작평가 및 생활동작분석)	치료적 운동 및 보조기, 의수족에 관한 것
5. 치과기공사	마. 수예 및 공작 바. 의료관계법규 가. 공중구강보건학개론 나. 구강해부학개론(치아형태 및 계통구강해부에 관한 것) 다. 치과재료학개론 라. 관교의치기공학 마. 치과충전기공학 바. 총의치기공학 사. 국부의치기공학 아. 가철성치열교정장치기공학	치과기공에 관한 것
6. 치과위생사	자. 의료관계법규 가. 구강생물학개론 나. 구강위생학개론 다. 치과임상학 라. 치과방사선학개론	치과위생에 관한 것
7. 의무기록사	마. 의료관계법규 가. 공중보건학개론 나. 의무기록관리학 다. 의학용어 라. 의료관계법규	의무기록에 관한 것
8. 안경사	가. 안광학(안경광학·기하광학·물리광학·안광학기기에 관한 것) 나. 안경학(안경조제 및 가공·안경학개론·안경재료에 관한 것) 다. 안과학(시기해부학·시기생리학·안질환·시기능이상에 관한 것)	조제 및 가공에 관한 것, 상품지식(렌즈·테)과 안광학기기의 기초 동작에 관한 것

[별표 2] <개정 2010.3.19>

과태료부과기준(제26조제1항관련)

근거조문	과태료부과대상	부과금액
법 제11조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법 제13조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법 제15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100만원